

의 안 번 호	제 호
의결연월일	2019. 3. .

의 결
사 항

구미시 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(안)

발의연월일	2019. 3. .
발 의 자	장세구 의원 외 1명

구미시 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(안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연월일 : 2019. 3. .

발 의 자 : 장세구 · 강승수 의원

1. 제안이유

구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대책을 강구하여 발전적인 보조금이 지원 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고자 구미시 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구성인원 : 7명(위원장 1, 부위원장 1, 위원 5)

나. 조사기간 : 2019. 3 ~ 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

다. 조사대상

○ 각종 보조단체 및 보조금 지원 전반

라. 조사범위

○ 구미시 보조사업 지원 관리실태에 관한 사항

○ 구미시 보조사업 운영 및 사업비 진행에 관한 사항

3. 참고사항

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

다. 「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 제3조

관련법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41조(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)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·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, 시·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,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,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·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·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.

□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

제39조(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) ① 법 제4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한다.

② 지방의회는 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한 조사의 발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조사 여부에 관하여 의결을 한다. 지방의회가 폐회 중 또는 휴회 중인 경우 조사의 발의가 있으면 지방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.

③ 감사나 조사는 제41조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에 의하여 한다.

④ 지방의회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 사무보조가 필요하면 지방의회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.

□ 「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

제3조(조사)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 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

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(이하 "조사위원회"라 한다)를 확정한다.

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.

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, 조사할 사안의 범위, 조사방법, 조사일정,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. 다만, 본회의에서 직접 조사를 행할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의결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.

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하여야 한다.

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.